

2021 년 연말정산 안내문

1. 연말정산 대상자 : 2021 년 12 월 31 일 기준 캡스텍 재직 근로자(2021 년 12 월 31 일 퇴사자 포함)

2. 서류제출 기한 및 연말정산 등록 마감일

- 서류제출 마감일 : 2022 년 01 월 28 일까지 우편 접수
- 연말정산 프로그램 등록 마감일 : 2022.01.28 까지 등록 접수

*** 연말정산 프로그램 등록 방법 ***

-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간소화자료조회-> 각항목 클릭 -> 한번에내려받기클릭
- ② <https://tax.adtkorea.com> 인터넷 주소 접속 후 로그인

(ID:캡스텍 사번/PW:생년월일 6 자리) (접속은 2022.01.20 부터 가능)

접속 후 기초정보 확인 -> 종전근무지 확인 후 해당사항 클릭 -> 국세청파일(PDF)업로드 ->부양가족등록

국세청PDF파일반영 -> 추가자료 있는 경우 공제정보 수기 등록 -> 동의 후 제출 클릭

3. 제출 서류(필수)

1) 연말정산 서류제출 표지

2)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해당 증빙 서류)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서류제출에 1 부 &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서류제출 1 부 각각 발송

3) 국세청 연말정산 증빙서류 출력물

4) 2021 중도 입사자의 경우 : 타회사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타회사와 합산 신고가 되지 않으면 2022 년 5 월에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 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장애우 지원수당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지원수당 신청서 1 부 및 장애인증명서 1 부 별도 우편발송

5. 연말정산 관련 & 프로그램 등록방법 관련 상담 센터

- 운영일자 : 2022 년 1 월 20 일 ~ 2022 년 1 월 28 일
- 시 간 : 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 상담전화번호★ : 031-5180-5481~5490

6.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번 및 근무사업장 기재요청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에 1 부 넣어 제출
- 장애우 지원수당 대상자는 장애우지원수당신청서&장애인증명서 각각 1 부 제출

7. 보내실곳

연말정산 서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 번길 23 4 층 HR 운영팀 (우편번호 13486)

장애우지원수당 서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 번길 23 4 층 HR 운영팀 (우편번호 13486)

8. 문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캡스텍홈페이지(www.capstec.co.kr) - 전화번호 : 02-1800-4600



2021년 연말정산 서류제출 표지

회사명		사 번		성 명	
소속명		연락처			

■ 기초 확인사항

(1) 본인이 연말현재(2021.12.31.)에 세대주 입니까?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input type="checkbox"/>	
(2) 2021년 내 현재 근무지 외 다른 곳에서 근무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연말현재(2021.12.31.) 보유한 주택수는 몇 개입니까?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 포함)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1주택 <input type="checkbox"/>	2주택이상 <input type="checkbox"/>
(4) 본인이 신청한 인적공제 사항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제출서류

해당 제출서류에 기록 요망

I.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1) 본인 (제출하는 항목에 "○" 표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전환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자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벤처기업 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월세액	

(2) 부양가족 (해당하는 항목의 공제를 신청하는 부양가족의 성명을 기록)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교육비	신용카드 등	기부금	월세

II. 간소화서비스 이외의 자료

(1) 본인 (제출하는 항목에 "○" 표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류	중(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투자조합출자 등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교육비	신용카드 등	기부금	기타

(2) 부양가족 (제출하는 항목에 "○" 표시)

장애인 증명서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실손의료 보험금	교육비	신용카드 등	기부금	기타

* 소속/사번/성명/근무지/연락처 및 정산해당사항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Feedback 시 필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출력 대상 항목 (www.hometax.go.kr, 1월17일부터 출력가능)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개인)저축, 신용카드, 기부금(일부) 등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2021. . . ~ 2021. . .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정공제 항목 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정계	-	-	-	-	-	-	-	-	-	-	-
						기타계	-	-	-	-	-	-	-	-	-	-	-
0			○			국세정											
1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I · 인적공제 및 소득

1 페이지

인적공제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명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비증가분		기부금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0년 전체사용분	2021년 전체증가분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정계	-	-	-	-	-	-	-	-	-
			기타계	-	-	-	-	-	-	-	-	-
0		국세정										
1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국세정										
		기타										

세액공제 명세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형료공제	연금보형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형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형료 외의 공적 연금보형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형료 계					-			
III.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상환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기타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 (합계)							
IV.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투자조합 출자 등	2019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20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21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④ 도서공연등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				
계 (①+②+③+④+⑤+⑥)					-			
⑦ 소비증가분_2020년 전체 사용분		사용금액		-				
⑧ 소비증가분_2021년 전체 사용분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V·세 액 감 면 및 공 제	연금 계좌	공제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							
	보혐료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15%		
		보험료 계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15%	
			납입시술비		지출액	-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							
	의료비 계			-							
	특별 세 액 공 제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			전액		
	교육비 계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5% 또는 25% 또는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 또는 X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X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X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월세액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 ²)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 금액(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1 페이지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22)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21)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23) 임대인 성명 (상 호)	(24)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5) 유형	(26) 계약 면적(m ²)	(27)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28)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29) 전세 보증금(원)
					개시일	종료일	

※ (25)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26)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 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 · 원리금상환액과 소득 · 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25)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29)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ISA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 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성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에 공제를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15%를 적용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장애우 지원수당 안내문

1. 목적 : 장애직원에 대한 수당금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2. 지원대상 (캡스텍직원)

-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직원
-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소지한 직원

3. 수당 지원 기준

구분	수당금액
장애(경증,중증)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연 1회 / 20만원

4. 제출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원본 (사본 가능) / 국가유공자증 사본 (상이 국가유공자 해당) 중 선택 제출
*장애인 증 사본 접수 불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인정일 확인을 위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 요청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 2)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 3)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5. 지급시기

11일자 급여 - 3월 11일 / 28일자 급여 - 2월 28일 / 7일자 급여 - 3월 7일 (매년 1회)

6.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4층 HR운영팀 (우편번호 13486)

